

2006. 1. 27.(금)
제1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

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

제천시의회
의회운영위원회

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

◆ 감사개요

1. 근 거 :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
제17조의2,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
2. 감사기간 : 2005. 11. 29.(1일간)
3. 대상기관 및 사무
 - 대상기관 : 의회사무국
 - 대상사무
 - 2005년 예산과목별 불용액 조서
 - 2004 ~ 2005년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집행내역
 - 2004 ~ 2005년 의정활동여비 집행내역
 - 2004 ~ 2005년 의회사무국 일반운영비 집행내역
 - 의회 진정 · 탄원 · 건의등 민원접수 및 처리실태
4. 감사방법 : 제출서류의 분석 · 검토, 질문답변

◆ 총 평

=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시정의 견제,
대안제시를 위한 보좌역할을 충실히 하였는가에 대한 감사결과 =

- 의정활동 보좌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시정견제 및 대안제시를 위하여 의정실무연수, 타 자치단체 및 선진지 방문을 통한 비교견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였음.
- 특히, 혁신도시 및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음.
-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기관·단체·시민 개개인의 의견을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히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여야 하나, 이를 위한 노력이 충분치 않음.
- 각종민원처리에 있어서는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신속, 성실하게 처리하였으나 민원에 대한 처리의 권한과 책임이 없는 이유로 집행부의 의견을 이첩 통보하는 등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상황이며, 이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◆ 건의사항

○ 건 명 : 기관, 단체, 시민과의 간담회 등 활용방안 강구

-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각종 의견을 수렴하여 이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후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므로 향후 기관, 단체, 시민과의 간담회등을 통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.